

농지전용 따른 농민부담 줄어든다.

농림부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농지전용에 따른 농민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곱하기 전용면적이다.

이는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기준도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1만 300~2만1,900원/㎡)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과기준을 개별 공시지가로 변경함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 부담금의 지급미터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30%)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분할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된 것인만큼 농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시상환 상호금융 대체자금 상환연장

농가부채대책으로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가운데 2006~2007년 중 일시에 갚아야 하는 5조 9,000억원의 상환기한이 3~5년간 유예돼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4%에서 3%로 인하되고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3%에서 2%로 내린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협상 비준 관련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6~2007년 중 일시상환해야 하는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 5조 9,000억원의 상환을 연기하되, 상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뒤 인센티브를 제공기로 했다"서 "원금의 10% 이상을 선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리 3%로 5년 동안, 원금의 10% 이상을 선납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리 5%로 3년 동안 각각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내년부터 3%로 인하하고 현행 4%인 재해대책자금 지원금리는 1.5%로, 농촌주택용자금리는 4~5.5%에서 3%로 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농지은행의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규모도 당초 100억 원에서 422억원으로 늘려 대상농지를 66ha에서 277ha로 확대기로 했다.

“관세상한제” 국내 축산업 큰 타격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체제하에서 농업 개방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듯 DDA 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률, 관세상한제 등 국내 축산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DA 농업협상이 양대 세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수출개도국그룹(G20), 농산물수입국그룹(G10) 등 주요국간 고위급 회의를 통해 관세감축률, 관세상한, 민감품목, 국내보조, 개도국 지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절충하고 있다. 이는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G20 등은 현재 선진국의 경우 75%~100%의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60~90% 이상의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50~9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G10은 관세 감축시 신축성을 부여받는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농축산물의 관세를 상한선 이하로 낮춰야 하는 관세 상한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10은 또 고(高)관세 품목 등의 관세 감축 폭을 최대한 줄이고 민감품목 인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수입농산물에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물리지 못하게 하는 ‘관세 상한제’로 상한선 75%를 들고 나왔는데 품목에 관계없이 관세를 일정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따라서 축산물로 예외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관세 상한 75%의 예를 들면 현재 양허관세 176%의 탈지·전지분유의 경우 101% 이상을 내려 75% 이상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구간경계 및 관세 감축률은 현재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90%의 관세를 감축하고 40~60%의 관세는 80%, 20~40%는 70%, 0~20%는 60%의 관세감축을 하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관세를 10% 내외로 하향 평준화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고 있는 것을 70%를 감축해 앞으로 10년동안 12%까지 관세를 낮춰야 하며 또 돼지고기(냉동)의 경우 현재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들어오던 것을 7.5%의 관세를 물고 수입해야 한다. 닭고기(냉동)도 마찬가지로 현재 20%의 관세를 8%로 낮춰야 된다.

이같이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 축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축산전문가들은 정부는 협상타결 이후 축산업 보호·육성대책을 강구하고 축산인들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한부총리는 “정부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0년간 119조원을 투자 및 용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농촌의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과 농외소득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도 조세감면 대상 포함돼야.

올1월부터 농업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세는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으나 축산업은 제외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농업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그 동안 이익이 발생할 때 납부하던 소득세를 2010년까지, 영농법인의 법인세는 2006년까지 각각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과 축산농가는 같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불만이 고조되면서 관련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는 벼, 화훼, 과실, 특

용작물 등에만 면세가 적용되고 축산업은 국세의 적용을 받아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5년이 지난 2010년 이후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축산업은 소득세 면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축산농가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전국축산단체협의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축산업도 농업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관계자는 “농업·농촌기본법 등에서 한결 같이 농업인과 농업의 범위를 축산업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축산신문 2005년 11월 1일〉

건강기능식품 도안 표시도 가능

원재료명에 주원료 우선표시, 주표시면 표시 정보표시면 병기도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의 표시가 도안으로도 가능하며, 원재료명 표시에서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수입제품에만 해당됐던 주표시면 표시사항의 정보 표시면 표시를 국내 제품에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은 ▲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도안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준 규격상의 명칭이 제품명 바로 위 아래 옆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은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값에 함유된 최종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원재료명을 표시함에 있어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 주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제품관련 적용특례를 국내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했다. 이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되며,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2007. 5. 31.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팀 김병태 팀장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제품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외국의 표시사례를 연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견 등을 수렴, 소비자의 알권리,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되어 있다.